

의안번호	제457호
의결 연월일	2013년 3월 일 (제318회)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3년 2월 25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제457호

제출연월일 : 2013년 2월25일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처분

(단위 : m², 천원)

기관명	구분	사업명	수량	금액
충주교육지원청	토지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	9,526.00	8,000,000
괴산중평교육지원청	토지	송면초 삼송폐교 부지 처분	10,972.00	427,908
	건물	송면초 삼송폐교 건물 처분	918.36	122,219
	소계		11,890.36	550,127
재무과	토지	장연초 유희임야 교환 처분	175,388.00	456,009
	토지	청천초 유희임야 교환 처분	142,945.00	200,123
	소계		318,333.00	656,132
합계		(5건)	339,749.36	9,206,259

3.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2.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천원)	처 분 시 기	처분 사유	매 도 요구자	비고
기관명	구분	소재지	수량(m ²)					
충주교육 지 원 청	토지	충주시 금릉동 701	9,526.00	8,000,000	상반기	미활용 부지로 충주교육지원 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한 매각 처분	.	도면1
송 면 초 삼송폐교	토지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10,972.00	427,908	상반기	괴산군의 송면권역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 활성화센터 활용계획에 따라 매각 처분	괴산군	도면2
	건물		918.36	122,219				
장 연 초	토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175,388.00	456,009	상반기	충북체고 이전부지내 국유재산(산림청) 교환 처분	산림청	도면3
청 천 초	토지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142,945.00	200,123	상반기	충북체고 이전부지내 국유재산(산림청) 교환 처분	산림청	도면4
합 계 (5건)			339,749.36	9,206,259				

① 충주교육지원청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토지) 처분

- 재산위치 : 충주시 금릉동 701번지
- 취득경위 : 2002. 6.27. 금릉초등학교 신설 부지로 매입
- 부지면적 : 9,526.00m²(대지)
- 추정금액 : 8,000,000천원
- 처분사유 : 충주교육지원청사 건립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처분(매각)
 - 금릉초 신설 부지로 매입하였으나 인근 상인 및 토지주들의 반발로 충주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결됨.

② 송면초등학교 삼송폐교 처분

- 폐교일자 : 1995. 3. 1.
- 재산위치 :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33
- 재산현황
 - 토지 : 10,972.00m²(2필지)
 - 건물 : 본관교사의외 6동 / 918.36m²
- 추정금액 : 550,127천원
- 사 유 : 괴산군의 송면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활성화센터 활용 계획에 따라 처분(매각)

③ 장연초 유희임야 교환 처분

- 재산위치 :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 86
- 교환면적 : 175,388.00m²
- 추정금액 : 456,009천원
- 교환방법 : 상호 감정평가 금액으로 교환
- 사유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부지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 재산과 교환추진으로 토지 매입 예산 절감

④ 청천초 유희임야 교환 처분

- 재산위치 :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산 22-1
- 교환면적 : 142,945.00m²
- 추정금액 : 200,123천원
- 교환방법 : 상호 감정평가 금액으로 교환
- 사유 : 충북체육고등학교 이전 부지내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 재산과 교환추진으로 토지 매입 예산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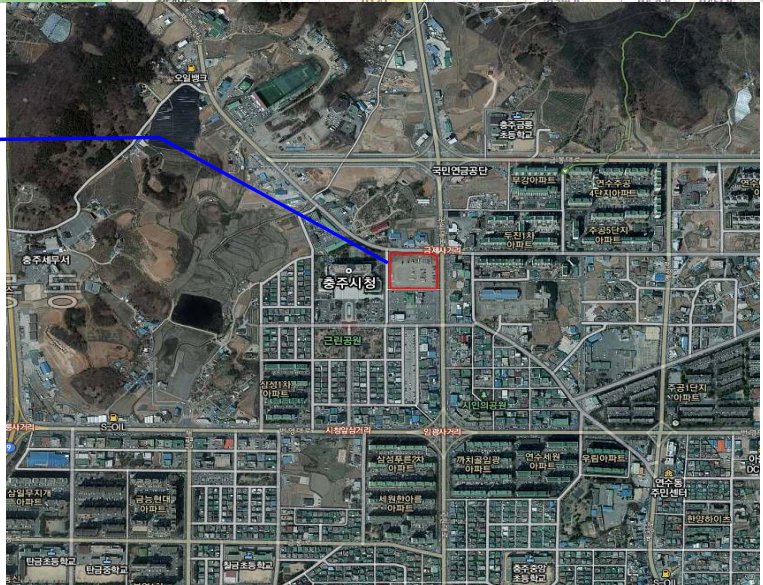
※ 교환대상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산105번지 57,481m²[2필지]
- 2011년 제2차 관리계획변경계획 취득[교환] 의결

도면 1 : 충주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토지) 위치도

건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추정금액(천원)	사유
충주 금릉동 미활용 공유재산(토지)처분	토지	충주시 금릉동	701	대	9,526	8,000,000	미활용 부지로 충주교육지원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처분(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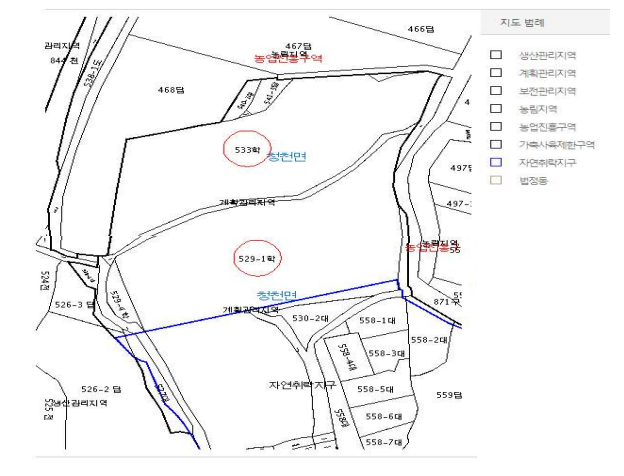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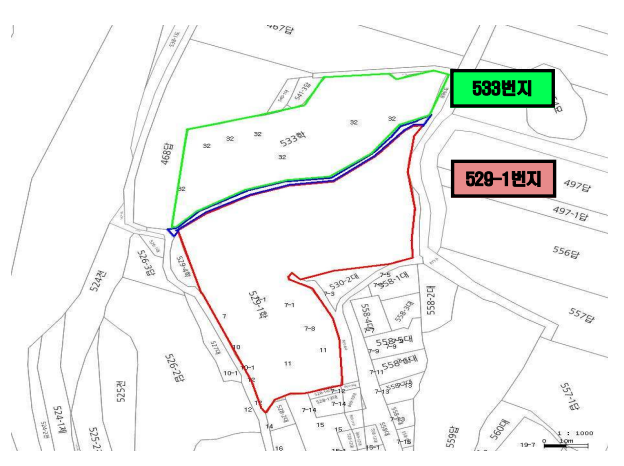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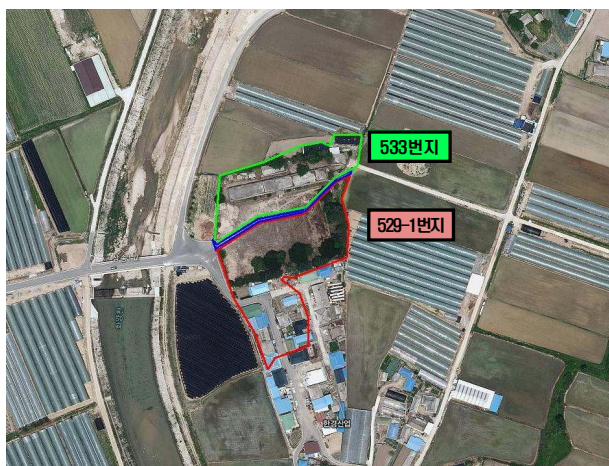


매각처분
예정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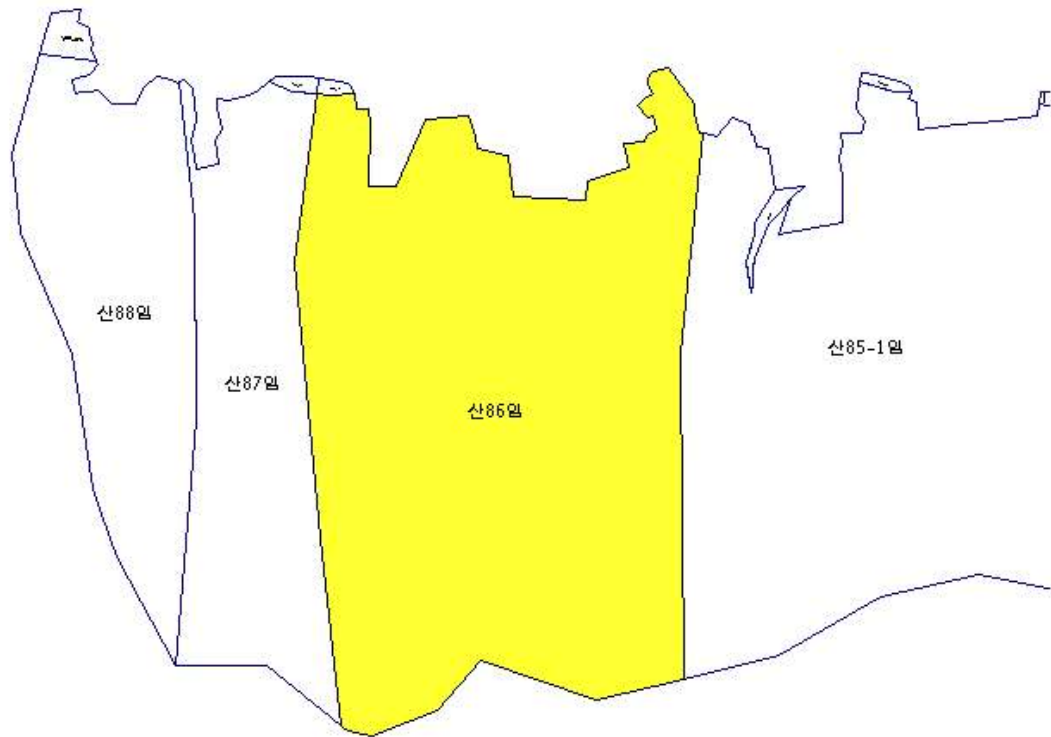
도면 2 : 송면초 삼송폐교 처분 위치도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건물명)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처분사유
송면초 삼송폐교 처분	토지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529-1	학교용지	6,902	269,178	괴산군의 송면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 활성화센터 활용 계획에 따라 처분(매각)
			533	학교용지	4,070	158,730	
			소 계		10,972	427,908	
	건물		교사	시벽스	697.50	122,219	
			숙직실	시벽스	43.00		
			사택	시벽스	58.10		
			창고	시벽스	19.80		
			창고	시벽스	56.70		
			샤워장	시벽스	22.26		
			화장실	시벽스	21.00		
소 계		918.36	122,219				
합 계					11,890.36	550,127	



도면 3 : 장연초 유희재산(임야) 처분 위치도

건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추정금액(천원)	사유
장연초 유희임야 교환처분	토지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산86	임야	175,388	456,009	충북체고 이전부자내 국유재산과 교환처분으로 매입비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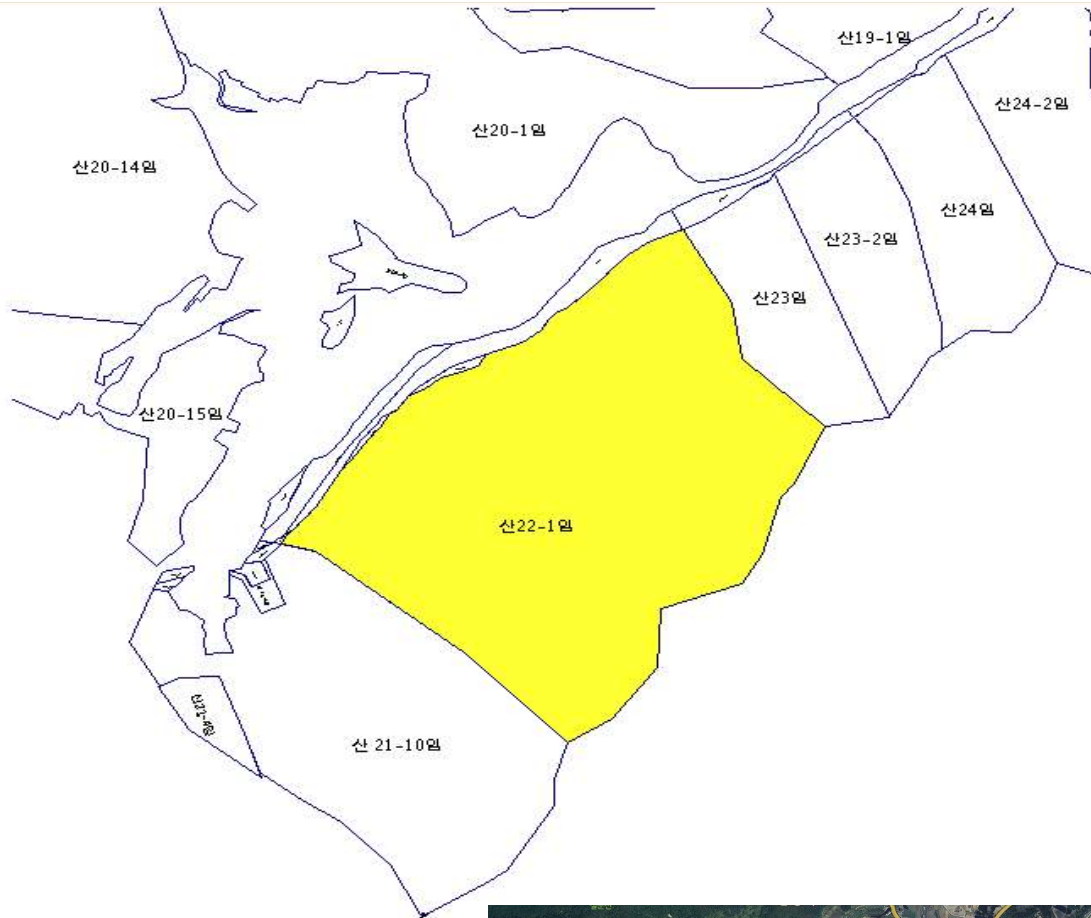


교환처분
예정위치



도면 4 : 청천초 유희재산(임야) 처분 위치도

건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추정금액(천원)	사유
청천초 유희임야 교환처분	토지	괴산군 청천면 금평리	산22-1	임야	142,945	200,123	충북체고 이전부자내 국유재산과 교환처분으로 매입비 절감



교환처분
예정위치



관계법령 발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p> <p>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p> <p>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p> <p>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p> <p>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p> <p>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p>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